

2024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

2024.01. 기준

순번	산업안전보건법	주요내용	벌칙
1	제14조(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)	○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 ○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, 시설,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	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	제1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	○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3	제16조(관리감독자)	○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-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안전·보건점검, 작업복 보호구·방호장치의 착용·점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	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4	제17조(안전관리자) 제18조(보건관리자) 제19조(안전보건 담당자)	○ 안전·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 수행 ○ 사업의 종류, 상시근로자 수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음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5	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	○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6	제25조(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)	○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치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 ○ 정기안전보건교육: 비상무직 판매업무외(12시간/반기), 사무직(6시간/반기) ○ 채용 시 교육: 건설업 외(8시간) ○ 특별교육: 건설업 외(16시간 이상), 밀폐공간 작업 등 39개 이상 ○ 관리감독자 교육: 전 업종, 연 16시간 이상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7	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	○ 안전·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 수행 ○ 사업의 종류, 상시근로자 수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음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8	제32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)	○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9	제34조(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)	○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0	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	○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해야 함 ○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·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함 1.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·위험요인 2. 위험성 결정의 내용 3.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	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등 직무미이행 시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1	제37조(안전표지의 설치, 부착 등)	○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, 비상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·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○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함 (금지표지/경고표지/안내표지/지시표지)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개소 당 10/30/50만원)
12	제38조(안전조치)	○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- 기계·기구, 기타 설비, 폭발성·발화성·인화성물질 및 전·열·압·진동·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- 굴착·채석·하역·발목·운송·조작·운반·해체·중량을 취급 및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 - 추락·붕괴·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등의 장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	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13	제39조(보건상의 조치)	○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- 원재료·가스·증기·분진·흙·미스트·산소 결핍·병원체·방사선·유해광선·고온·저온·초음파·소음·진동·이성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- 작업장 배출기체·액체 또는 찌꺼기, 계속 감시, 정밀공작, 단순 반복 작업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 -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, 환기·채광·조명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	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14	제54조(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)	○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해당작업 중지 및 전·파·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	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5	제57조(산업 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)	○ 산업재해 발생 보고 ※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- 사망 시: 지체 없이 전·파 및 팩스 보고(고용노동부 관할지청) -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: 관할지청에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	- 은폐: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 - 미보고 및 거짓 보고: 1,500만원 이하 과태료
16	제63조(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)	○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의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(보호구 착용 등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 지시 제외)	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17	제80조(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등의 방호장치)	○ 누구든지 통역으로 작동하는 기계·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·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, 대여,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·대여의 목적으로 전·파하여서는 아니됨 - 예초기, 원심기, 공기압축기, 금속 절단기, 지게차, 포장기계(진공포장기, 랩핑기 한정)	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18	제84조(안전인증) 제87조(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)	○ 유해·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- 프레스·전단기·절곡기·크레인·리프트·압력용기·롤러기·사출성형기·고소작업대·곤돌라·기계톱(이동식)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로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(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 인증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 함) ○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명·모델명·제조 수량·판매 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	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
19	제93조(안전검사)	○ 유해·위험 기계, 기구,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 - 프레스·전단기·크레인(2톤 이상) 리프트·압력용기·곤돌라·국소배기장치·원심기·화학설비·건조설비·롤러기·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, 컨베이어, 산업용로봇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	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0	제110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)	○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"물질안전보건자료"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-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별도제출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1	제112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)	○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에는 대체 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 - 사전 승인 시 비공개 타당성, 대체 자료의 적합성, MSDS의 적정성 확인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2	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, 비치 등) 제115조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)	○ 화학물질 등 사용 시, 저장·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게시 ○ 화학물질의 용기·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	미게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(작업장 1개소당) 용기 등의 경고 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3	제118조(유해·위험 물질의 제조 등 허가)	○ 유해 화학물질 제조, 사용 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-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별도제출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24	제119조(석면 조사)	○ 건축물·설비의 철거·해체 시 석면 조사 실시 후 그 결과의 기록·보존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, 5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5	제122조(석면 해체, 제거)	○ 석면 해체·제거 작업 기준 준수 ○ 건축물·설비에 함유량과 면적 이상 석면 함유시 석면 해체·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·제거 실시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26	제125조(작업환경측정)	○ 시정규칙 별표21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-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유해인자, 소음(80dB이상) 및 고열의 물리적 유해인자, 분자의 유해인자 - 반기 1회/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	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7	제129조(일반건강진단) 제130조(특수건강진단 등)	○ 일반건강진단-사무직은 2년에 1회/비사무직은 1년에 1회 ○ 특수건강진단-시정규칙 별표22의 노출근로자(6개월~2년에 1회) -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인자, 소음과 진동 및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, 야간작업 ○ 배치 전 건강진단: 신규채용, 작업 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○ 산업재해 발생기록, 관리책임자·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, 석면 조사 서류, 작업환경측정·건강진단 서류 등(3~30년간 보관) - 안전진단대상 기계에 관한 서류: 3년, 자율안전기준 증명 서류: 2년,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 결과: 2년 등	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8	제164조(서류의 보존)		300만원 이하의 과태료